

제303차 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 의결사항

심의일자 : 2024. 1. 12.(금)

□ 안건명 : 「거여119안전센터 이전신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용역발주심의
위 안건에 대한 제303차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심의결과 아래 주요 심의내용
및 별첨 위원별 심의 의견을 보완·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채택」 의결함.

[주요 심의내용]

- 안전성과 시공성 확보, 향후 증축 및 인원 증가 대비에 관한 내용 추가 검토할 것
- 소방차량 제원이 포함된 차량 회전 공간 등을 명기할 것
- 119수보시스템을 기존센터에서 이설 설치하는 것인지 확인 후 “119수보시스템은 기존 안전센터의 장비를 조사 및 발주처와 협의 후 신설 안전센터로 이전 설치한다.” 라는 내용을 추가할 것
- 기계설비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기계설비 기술기준 및 유지관리기준(고시) 등 기계관련 법규를 추가할 것
- “CPM 네트워크 등”을 “PERT/CPM 방식 등”으로 수정할 것
- 공사기간 산정 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제2021-1080호, 2021. 9. 8)에 따라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명시할 것

첨부 : 위원별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각 1부. 끝.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 거여119안전센터 이전신축공사 설계용역 용역발주심의

분 야	검 토 의 견	비 고
건축 계획	<p>1. 과업내용서 보완 및 검토사항</p> <p>(1) 3P. 제1장, 4. 과업의 범위, 나. 2). 가) 규모, “연면적(± 5% 범위 내 조정가능.”를 ± 5%를 초과하지 않도록 검토요함.</p> <p>(2) 3P. (1)과 동일 문항 중 “건폐율, 높이제한 등.”을 건축면적, 건물 규모로 표현 검토요함.</p> <p>(3) 3P. 제1장, 4. 과업의 범위, 나. 3). 추정공사비에 대한 설명 표기 추가 검토요망)</p> <p>(4) 3P. 제1장, 4. 과업의 범위, 나. 5). 과업기간 180일까지를 180일(공휴일 포함) 추가 내용 검토요함.</p> <p>(5) 6P. 6. 과업 준수사항. 나, 부대업무. 1) 지반조사 시 (NX _공)지정에 관한 검토요망.</p> <p>(6) 7P. 제2장, 2. 업무협의 및 보고, 나. 착수보고에 착수일로부터 언제 하는지 기간 명기와 주간업무(공정)보고는 없는지 검토요망.</p> <p>(7) 9P. 제2장, 10.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 (4).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고시호, 날짜 검토요망.</p> <p>(8) 14P. 제3장, 2. 설계방향의 설정에서 안전성과 시공성 확보, 향후 증축 및 인원 증가 대비에 관한 내용 추가 검토요망.</p> <p>(9) 31, 36P. 기본, 실시설계 성과품 제출 시 공중 분리 및 포함 여부 검토요망.</p>	

분야	검 토 의 견	비 고
<p>건축 계획</p>	<p>2. 설계공모지침서 보완 및 검토사항</p> <p>(1). 9P. 제출내용 중 도면 설계 개념도에 포함해야 하는 개념 명기 (예시: 배치 및 단면 동선, 층별 조닝 등)</p> <p>(2). 23P. 소방차량 제원 포함된 차량 회전 공간 등 명기 검토요망</p> <p>(3). 27P. 소방차고 천장고 높이 확인 검토요망. (괄호 예시가 6.1M)</p> <p>3. “기타” 오류 사항 수정할 것.</p> <p>(1). 용어의 통일: 과업지시서 ⇒ 과업내용서 용역수행자, 수급인, 설계자 ⇒ 수급인 발주기관, 발주처 ⇒ 발주기관</p> <p>(2). 11P. 제3장 과업의 세부지침. 1. 나, 검토되어야 할 관련법규 24, 36번 동일</p> <p>(3). 3P. 설계공모지침서 공모 범위와 3P. 과업내용서에서 연면적 및 규모(범위 상이), 용도, 공사비 등 표기 통일</p>	
<p>종합의견</p>	<p>(조건부채택) 위 사항의 검토 및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p>	

2024년 1월 8 일

심의위원 :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 거여119안전센터 이전신축공사 설계용역 용역발주심의

분야	검 토 의 견	비 고
건축 구조	1.의견없음	
종합의견	원안채택	

2024년 1월 3일

심의위원 :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 거여119안전센터 이전신축공사 설계용역 용역발주심의

분 야	검 토 의 견	비 고
	<p>1. 기본설계 용역수행(P40)</p> <p>(1) 가. 일반사항</p> <p style="padding-left: 20px;">2),3) 기초 조사~ → 기본 조사~</p> <p>나. 기본사항</p> <p style="padding-left: 20px;">4) 주변 현황 ~ → 과업 부지의 주변 현황 ~</p> <p style="padding-left: 20px;">4) ~가능한 대지~ → ~가능한 과업 대지~</p> <p style="padding-left: 20px;">6) ~고려하여 유지~ → ~고려하여 안전하고 유지 및 ~</p> <p>라. 지장물 조사</p> <p style="padding-left: 20px;">1) ~ 구조물, 건축물 ~ → ~ 구조물, 인접 건축물 ~</p> <p>2. 실시설계 (P42)</p> <p>(1) 가. 일반지침</p> <p style="padding-left: 20px;">12) 구조계산, 수리계산 ~ → 가시철,구조계산, 수리계산 ~</p> <p>(2) 나. 세부지침</p> <p style="padding-left: 20px;">2) 토공설계</p> <p style="padding-left: 40px;">가) 지반조성</p> <p style="padding-left: 60px;">(2) ~구조물 잔토를~ → ~ 구조물 시공시 잔토는 ~</p> <p style="padding-left: 40px;">나) 터파기</p> <p style="padding-left: 60px;">(3) ① ~ 굴착방법, 지보공법을 ~ → ~ 굴착방법, 흙막이공, 지보공법을 ~</p> <p style="padding-left: 60px;">⑤ ~ 설치계획서를 제출하고 ~ → ~ 설치계획, 계측빈도, 관리기준치 등이 포함된 계측관리 계획서를 제출하고 ~</p> <p style="padding-left: 60px;">⑥ ~ 위하여 시공된 ~ →</p>	

분야	검 토 의 견	비 고
	<p style="text-align: center;">~ 위하여 가능한 시공된 ~</p> <p style="text-align: center;">(4) ⑥ ~ 가시설은 주변침하 ~ →</p> <p style="text-align: center;">~ 가시설은 굴착 및 지하수위 저하로 인하여 주변침하 ~</p>	
종합의견		

2024년 1월 02 일

심의위원 :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 거여119안전센터 이전신축공사 설계용역 용역발주심의

분 야	검 토 의 견	비 고
기계설비	<p>1. 과업내용서 제3장 세부지침 중 현행화 및 추가 검토</p> <p>(1) 11쪽, 1. 설계기준 나. 검토되어야 할 관련법규 중 법규 현행화</p> <p>① 6) “오수 및 축산폐수의 처리 ~” 삭제</p> <p>② 9) “도시가스의 안전 ~”을 “도시가스사업법 관계 법령 등”으로</p> <p>③ 23) “승강기시설 ~”을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p> <p>④ 26) “~ 편의증진에 ~”을 “~ 편의증진 보장에 ~”로</p> <p>⑤ 기계설비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기계설비 기술기준 및 유지관리기준(고시) 등 기계관련 법규 추가</p> <p>(2) 26쪽, 라. 기타요구조건 중 8) “~휴게 공간 확보”를 “휴게 공간을 확보하며, 휴게공간은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한다.” 추가</p> <p>2. 과업내용서 제4장 분야별 과업지시서 중 용어일치 및 변경 검토</p> <p>(1) 35쪽, 3) 일위대가표 중 “감독원”과 전체 과업내용서 내의 “감독관” 용어 일치</p> <p>(2) 36쪽, 라. “건설기술산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변경</p> <p>3. 과업내용서 3. 기계분야 과업지시서 중 추가 및 변경 검토</p> <p>(1) 52쪽, 2. 관계법규 조사 중 “기계설비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기계설비 기술기준(고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고시)”, 승강기 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기계관련 법규 추가</p> <p>(2) 53쪽, 마. 환기설비 중 1) “~기계실 등”을 “~기계실, 식당 및 주방 취기확산 방지 등”으로 추가</p>	

분야	검 토 의 견	비 고
기계설비	<p>(3) 53쪽, 카. 기타사항 중 2) “~공간을 확보한다”를 “확보하며, 화재 확산 및 전이 예방을 위해 층별 방화구획을 고려한다”로 변경 검토</p> <p>(4) 54쪽, 6. 기본설계 성과품 제출 중 “부하계산서(개략)” 추가</p> <p>(5) 55~56쪽, 사. 도시가스설비 중 3) “가스안전공사”를 “한국가스 안전공사”로 변경</p> <p>(6) 56쪽, 아. 오수정화시설 중 1) “환경부 고시에 따른~”을 “환경부 관련 법규 및 고시 등에 따른~”으로, 2) “~충분히 배기될 수 있도록~”을 “~충분한 배기와 취기확산이 방지될 수 있도록”으로 변경</p> <p>(7) 57쪽, 4. 설계도면 사. 각 장비별 상세도 및 연결 상세도 중 1) “~헤드~”를 “~헤더(Header)~”로 변경</p> <p>(8) 57쪽, 자. “~국토해양부 고시~”를 “~국토교통부 고시~”로 변경</p>	
종합의견	검토의견을 조건으로 “조건부 채택”	

2024년 1월 8 일

심의위원 :

2024. 1. 8.(월) 까지 본 검토서를 e-mail(eunki13@seoul.go.kr)로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 거여119안전센터 이전신축공사 설계용역 용역발주심의

분야	검 토 의 견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환기시설이 가능하여야 한다“ 문구 삭제(21쪽 전기실 및 발전기실 계획 4)항) - “단위 건축물 내 환기시설에 대하여~중략~환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에 전기실 및 발전기실 포함됨(17쪽 마. 설비계획 6)항)“전원 380V 3상 확보한다”를 “3상 380V 전원을 확보한다”로 정확한 용어로 수정(26쪽 1) 호스건조대 하위 내용)119수보시스템을 기존센터에서 이설 설치하는 것인지 재확인후 “※ 119수보시스템은 기존 안전센터의 장비를 조사 및 발주처와 협의후 신설 안전센터로 이전 설치한다.” 내용 추가(26쪽 5항 119수보시스템 (이전) 하위 내용)“CPM 네트워크 등”을 “PERT/CPM 방식 등”으로 수정(35쪽 8.공정표 가.항 / 74쪽 2.설계도서 작성기준 가.공통사항 7항 참조)“발전기 방렬 소음 및 진동 대책” 문구를 “발전기 운전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 대책”으로 수정(60쪽 다) 자가발전 설비 및 비상 전원 설비 (3)항)“피뢰 보호각에 의한 건물 보호”를 “피뢰설비는 보호각법, 회전구체법 및 메시법에 의한 건물 보호”로 수정(61쪽 사) 기타 부대설비 (1)항)성과품 제출 저장장치를 CD ROM 또는 USB로 통일시킬 것(31쪽, 36쪽, 37쪽, 39쪽, 48쪽, 59쪽, 62쪽, 69쪽, 78쪽)성과품 제출 설계도면은 A3 도면만 제출하는 것으로 수정, 요즘 A1은 잘 사용 안함(69쪽, 73쪽, 78쪽)	
종합의견	조건부채택	

2024년 1월 8일

심의위원 :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 거여119안전센터 이전신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용역발주심의

분 야	검 토 의 견	비 고
건 축	<p>1. 녹색제품 구매촉진 관련 다음 내용을 반영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공사설계서에는 녹색제품 사용근거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때 친환경건설자재 정보시스템(http://gmc.greenproduct.go.kr)을 활용하여 공사현장에 적합한 건설자재를 적용하여야 한다. - 종합공사 40억원 이상, 전문공사·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 등 3억원 이상 공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직접구매품목을 녹색제품으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공사내역서의 관급(지급)자재를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결과 녹색제품 설계 반영실적과 증빙자료를 정산·보고하여야 한다.(용역업체 → 발주처 → 기후환경정책과) <p>2. 야생조류 충돌방지 대책 방안을 강구하여 건축 설계토록 명시하고 검토내용을 최종 성과물에 포함·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추가할 것</p> <p>3. 공공시설 디자인 품질관리 개선 방안을 과업내용서에 반영할 것 (디자인정책담당관 - 12235, '23.10.2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및 실시설계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공공디자인 체크리스트 2021 및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을 반영하여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디자인 체크리스트 https://ebook.seoul.go.kr/Viewer/H3H73RCSXZQJ ※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지침 http://www.sudc.or.kr/cop/bbs/selectBoardList.do?bbssetupSn=11#ids475 -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조례」 제13조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절차(필요시 유니버설디자인 사전컨설팅 포함) 이행하도록 과업내용서 등에 포함 	

4. 공사기간 산정 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제2021-1080호, 2021. 9. 8)에 따라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명시할 것

5. 작업일지의 작성 및 투입일수 기록 제출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킬 것

- 작업일지의 작성

계약상대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과업수행 완료시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일지 양식은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서식4]에 따른다.

- 참여기술자 투입일수 기록(Time Sheets) 제출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의 투입일수에 대한 개인별기록을 월간 단위로 작성하여 분기별로 제출하되 분기 시작달의 10일까지 투입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참여기술자별 투입기록(월)

성 명 : 인

책임기술자 : 인

월/일	투입시간	휴일(야간) 근무시간	수행업무	비 고
6/1				
.				
..				
6/31				

6. 설계도서 작성기준 관련 아래 내용을 검토하여 반영할 것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서의 작성은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용역관리편람(건축편)과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에 의거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성과품을 제출한다. 그리고 내역서 작성은 최종 설계도면 확정 후 재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물량 등의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최종 성과품 관련 아래 내용 검토하여 반영할 것

- 계약상대자는 최종 성과품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종 설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용역관리편람(건축편) 성과품작성기준에 의한다.

	<p>8. 사후 설계관리의 ‘디자인 감리제도’는 ‘설계의도 구현’ 업무와 중복되는 사항인지 재검토할 것</p> <p>9. 용역 명칭 일원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업내용서: 거여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거여119안전센터 청사 건립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공모지침서: (가칭)거여 119안전센터 신축이전 사업 <p>→ (예시)거여119안전센터 이전·신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p> <p>10. 과업 규모 일치시킬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업내용서: 1,290㎡(± 5% 범위 내 조정가능) - 공모지침서: 1,290㎡(± 10% 범위 내 조정가능) <p>11. 과업내용서 넘버링 수정(p4)</p> <p>7) 사후 설계관리</p> <p>가) 기간 : 기본설계 완료 후 ~ 공사 준공</p> <p>나) 주요내용: 서울시 ‘디자인 감리제도’에 따라 건축설계가 완료된 후 공사시공 과정에서 설계도서의 해석, 자문,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위치·재질·질감·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설계업무를 말함.</p> <p>※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5조 제 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사후설계관리업무 대가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라 별도 산정·지급</p> <p>8) 추진일정(예시)</p> <p>가) 공사발주 예정시기 : 2025년 1월 ~ 2025년 2월</p> <p>나) 공사예정기간 : 2025년 3월 ~ 2026년 9월(18개월)</p> <p>다) 공사발주방법 : 미정</p> <p>12. 용어 수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해양부 → 국토교통부 - 과업지시서 → 과업내용서 	
기 계	<p>13. 과업내용서(“실시설계” 차. 기타사항)에 다음 사항을 추가할 것</p> <p>6) 펌프 설계 시 캐비테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할 것</p>	

<p>전 기 · 통 신</p>	<p>14. 설계 적용 법규 및 기준(p.60)에 다음 내용을 보완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공업규격 → 한국산업표준(KS)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p>15. 공사 공정표(p.63)에 다음 내용을 보완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공사 및 소방공사의 경우 전체 공사 기간에 공인기관 사용전 검사와 준공검사 일정이 반영되도록 한다. <p>16. 전기분야 과업지시서(p.59)에 다음 내용을 보완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설비는 내진 대책을 강구하여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 전기시설물의 보수 및 유지관리가 용이해야 한다. 	
<p>토 목</p>	<p>17. 특정제품 또는 신기술, 특허공법 적용과 관련된 절차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기 바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상대자가 특정제품 또는 신기술, 특허공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효과, 시공성, 경제성, 적용사례, 유지관리 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관련규정에 따라 공법을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신기술 반영의 경우 필요 시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검토 및 선정 보고서 발주기관에 제출) 	

2024년 1월 9일

심의위원 :